

<b>환경부 보도자료</b>
<input type="checkbox"/> '05.12. 배포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진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총 17쪽

국제협력관실	조병옥 담당관	전화	02-2110-6559
지구환경(담)	조한진 사무관	(메일)	cho014@me.go.kr

##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적극 합의

-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논의 내년부터 시작-

2012

working group

EIG 가

, .

가

가

### 1.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

-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 동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**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** 논의를 위한 **협의체(working group, dialogue)**를 구성하기로 이들간의 철야협상을 통해 합의
  - 기후변화협약 체제 내에 이미 교토체제 이후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기존 협약체제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어떤 논의절차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과 1차 공약기간 동안의 목표달성 여부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, 구성 절차, 운영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은 working group은 무의미하다는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,
  - 선진국(부속서 1 국가)의 의무부담 논의를 위해 임시작업반(ad hoc working group)을 지체없이 구성하고 그 활동결과를 매년 당사국 총회에 보고토록 결정

- 한편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문제는 공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형태의 **workshop**을 통하여 협의 (**dialogue**)하고 활동결과를 매년 당사국 총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
- 이에 따라 개도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가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임
  - OECD국가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감축의무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변화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
  - 신·재생에너지 개발, 산업구조 개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대책에 대한 점검,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과 함께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하면서도 협약정신에 부합하는 감축방식 개발 등 적극적·공세적인 협상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-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세부이행지침인 **마라케시 합의문**이 공식 채택되어 부속서 1 국가들의 감축의무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되었음
- 이 외에도 당사국들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임을 인식하고, **CDM사업의 활성화**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채택
  - 즉, 2012년 이후 까지 CDM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,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(**program**)까지 CDM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
  - 이에 따라 기업의 CDM사업 추진을 지원하고,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

## 2. 정부대표단의 활동성과

- 60여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이번 총회에 참가한 우리나라는 수석대표인 **이재용 환경부장관**이 **기조연설**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고,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**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**
- 우선 환경협력그룹(EIG) 환경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2000년 EIG가 결성된 후 처음으로 향후 **기후변화 대응체제에 관한 EIG 공동 입장을 문서화**하였으며, 이를 총회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를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
  - 의장국인 **캐나다**와는 양국간 청정개발체제 사업 촉진 및 상호 협력,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“**청정개발체제사업 촉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양해각서**”를 체결
  - 또한 **영국, 호주, 프랑스, 인도네시아, 미국, 싱가포르 및 헝가리** 등 주요 국가들과 **양자회담**을 개최하여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각국과의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고, 기후변화 대응 관련 **기술협력, CDM사업 추진방안 협의** 등 적극적인 양자 및 다자차원의 환경 외교를 펼침
- 이 외에도 실무대표단은 지난 7월 미국, 일본, 중국, 인도, 한국, 호주 등 6개국이 **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을 위해 아·태지역 파트너십**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**후속조치**로
  -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청정화석에너지, 재생에너지, 발전 및 송전 등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**8개 기술협력분야 과제**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**Task Force 구성**에 합의
- 또한 교토의정서 **의무준수위원회 협조분과**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진출하는 등 외교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둠

<참고 자료>

붙임 :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 참가결과

<붙임>

##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결과

### 1. 회의 개요

가. 일시 및 장소 : 2005. 11. 28~12. 9, 캐나다 몬트리올

나. 참가현황 : 189개 협약당사국 정부대표 및 국제기구, NGOs 등에서 약 10,000여명 참가

다. 한국대표단

- 환경부장관을 정부수석대표로 국조실, 외교부, 산자부 등 65명 참가(산업계, NGO 등 33명 참가)

### 2.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

가.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

#### □ 논의배경 및 동향

- 교토의정서 제3조 9항에 근거하여 2012년 이후 부속서 1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
  - ※ 3조9항 : 1차 의무감축기간이 끝나기 적어도 7년 전부터 부속서 1 국가의 차기 감축의무를 논의할 것을 규정
- EU 등 선진국은 부속서 1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협상과 함께 개도국의 참여 강조
- 개도국은 개도국 의무부담 논의를 적극 반대하면서 부속서 1 국가 감축협상을 위한 임시작업반의 즉시 구성을 주장
- 의장국인 캐나다는 선진국 감축체제와 개도국의 의무부담 논의(two tracks)를 위한 **working group** 구성을 제안

## □ 논의결과

- 미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이틀간의 철야협상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
- 선진국 의무부담 논의를 위해 지체 없이 임시작업반(ad hoc working group)을 구성하여 활동 시작
  - 최초 회의를 24차 부속기구회의('06.5월 예정) 직전에 개최하고, 활동결과를 매년 당사국 총회에 보고
  - 1차 공약기간('08~'12)과 2차 공약기간('13~'17)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시한 부여
  - 당사국은 자국의 입장과 의견을 '06.3.15일까지 제출
-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의 감축의무참여 논의를 위한 결정문 채택
  - 공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형태의 workshop을 통한 협의(Dialogue)
  - 협의를 위해 2명의 부의장(부속서1 국가 및 비부속서1 국가 대표)이 임명되고, 논의결과를 매년 당사국 총회에 보고
  - 당사국은 '06.4.15일까지 자국의 의견서를 제출하고, 협의를 위해 필요한 기금조성에 기여 권장

## 나. 마라케시 합의문의 공식채택

- 제7차 당사국총회('01.11)에서 교토의정서 이행 세부지침인 마라케시 합의문을 공식 채택(참고자료 1)
- 개도국의 역량강화, 재정 및 기술지원 방안, 교토메카니즘 운영 방법 등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완성을 의미

## 다. 청정개발체제(CDM)제도 개선

- 당사국들은 CDM사업의 유용성에 공감하고 CDM활성화를 위해 다음사항 합의(참고자료 2)
    - 2012년 이후 까지 CDM사업의 지속성 확보
    - CDM 관리의 투명성·효율성 확보, 검증방법의 단순화와 명확성 확보 문제는 집행이사회가 방안을 강구하여 제출
    - 지역적/국가적 수준의 정책 및 조치(Policy & Measures)는 CDM으로 인정하지 않고, 정부대책(Program)은 인정
- ※ Program에 대한 정의는 추가적 논의 필요

## 라. 부속서 1 국가의 의무준수 절차 및 체계

- 마라케시 합의문에 규정된 의무준수 절차 체계를 공식 채택하고, 교토의정서 규정화 여부는 '07년까지 결론 도출
    - 의무준수절차 체계를 금번 총회에서 공식 채택하여 즉시 가동시키고자 하는 EU입장과 교토의정서 규정에 포함을 주장하는 사우디의 입장을 절충
- ※ 의무준수절차 체계는 의무준수위원회 설치, 의무 불이행시 벌칙 등을 규정

## 마. 산림전용(deforestation)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

- 산림전용 방지사업을 CDM사업으로 인정하자는 의제는 기준년도 설정, 방법론 문제로 다음 회의에서 검토기로 합의
- ※ 개도국의 산림전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20%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, 연평균 산림전용율 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할 경우 CDM으로 인정하자는 제안

## 바. 기타 주요 의제

- 기술개발 및 국제적 기술이전 노력
  - 사무국은 “기술이전 이행 증진을 위한 전략 및 권고안”을 작성하여 ‘06년말 까지 제출
-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“5개년 작업프로그램” 활동 계획을 다음 회의에서 수정·보완(참고자료 3)
- 국제항공 및 해상운송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별 배출량에 포함시키자는 의제는 합의 실패
- 기후변화 관련 기금운영(Financial Mechanism)
  - 기후변화특별기금은 기금의 사용가능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개도국과 기금사용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선진국 의견 대립으로 합의 실패
  - 적응기금은 국가특성 고려, 투명한 재정 운영 등 운영원칙에만 합의
- 개도국의 역량강화(Capacity Building)
  - 10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“역량강화 이행방안”의 이행 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개도국에 재정지원 합의
  - 개도국의 CDM 이행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합의문 채택
- 부속서 1 국가의 국가보고서 검토
  - 부속서 I 국가가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등 국가보고서를 전문가검토팀(부속서1 국가와 개도국이 동수 참여)을 구성하여 정밀검토(‘06~’07년 2년간) 실시

### 3. 정부대표단 활동 및 주요 성과

---

#### 가. 수석대표(환경부장관)

##### □ 기초연설(12.7)에서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노력과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입장 표명

- 기후변화대응 3차 정부대책, 아·태 파트너십 등 국제적 기술협력 노력 등 우리나라 정책 소개
-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 준수, 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인센티브 필요 등 향후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입장 표명
- 선·개도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수행 및 향후 온실가스 감축체제 논의를 위한 working group 구성 지지 등

##### □ EIG국가와 공동입장 마련

- 수차례의 실무회의와 EIG 환경장관회의를 거쳐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공동입장 마련(참고자료 4)
  - 협약의 기본원칙 준수와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식 개발 등
- 당사국총회 의장에게 공동입장 전달 및 공동기자회견 개최

※ EIG(Environmental Integrity Group) : 한국, 스위스, 멕시코, 모나코, 리히텐슈타인 5개국으로 구성(2000.9)

## □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한 상호협력방안 논의

### ○ 캐나다

- “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양해각서” 체결(참고자료 5)

### ○ 영국

-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협력, 양국 기후변화 연구소간 교류·협력 논의

### ○ 프랑스

- 한·불 수교 120주년(‘06년)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강화, CDM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합의

### ○ 인도네시아

- CDM 사업,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 및 환경협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‘06년 2월전까지 작성

### ○ 미국, 싱가포르, 헝가리

-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대응 체제, 기술협력 방안 등에 대한 폭 넓은 협조방안 논의

## 나. 실무대표단(관계부처 합동)

### □ 아·태 파트너십 활동계획 잠정합의

- 현장채택과 파트너십 정식 출범을 위한 호주 각료회의(‘06.1.11~13) 개최

○ **파트너십 작업계획(Work Program) 마련**

- 참가국 공통 관심분야 및 단기간 성과 달성이 가능한 **8개 기술협력분야** 확정 및 분야별 Task Force 구성 합의

※ 8개 기술협력분야 : 전력공급부문 3개 분야(청정화석에너지, 재생 에너지/배전, 발전/송전) 및 산업부문 5개 분야(알루미늄, 건축물 및 건축설비, 시멘트, 채광, 철강)

- 산업시설 및 건축물의 에너지시스템 진단을 위한 아·태지역 **에너지기술 협력센터(Technology Cooperation Center)**를 우리나라에 설립 제안

□ **각종 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입장 발표 및 국제동향 파악**

- 기후변화협약 과학기술부속기구(SBSTA) 및 이행부속기구(SBI) 회의, 140여개 부대행사 등

□ **정부 및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사례 홍보관 운영**  
(에너지관리공단 주관)

□ **기후변화협약 주요 국제기구에 전문가 진출**

- 우리나라 전문가가 교토의정서 **의무준수위원회 협조분과 교체위원회**에 진출(주 프랑스 대사관 최재철 공사참사관)

※ 의무준수위원회는 가입국들의 의무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하고 조언하는 협조분과와 위반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강제분과로 구성(임기는 4년)

- 금년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**CGE(국가보고서 전문가 그룹)전문가 연임 성공**(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박사)

## 4. 평가 및 향후대책

- ◇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개도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 본격 개시
- ◇ OECD 국가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논의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의무부담 압력 가중 예상
- ◇ 기후변화 대응체제 강화와 적극적인 협상대책 마련을 통해 갑작스러운 의무부담 가능성에 대비 필요

### 가. 기후변화 대응체제 강화

- 2012년 이후 의무감축 가능성에 대비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,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, 산업구조 개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 마련
  -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확보 및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 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필요
    -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침 제공
  -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대응 업무를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검토
- 전략적인 기후변화 협상대책 마련
  -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하면서도 협약정신과 부합하는 감축방식 개발 등 적극적·공세적인 협상전략 마련

- 향후 체제에 대한 협의(Dialogue)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, EU 등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와 협력 강화
-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등 외국 전문가들과 교류 확대 추진

## 나. 국가적 차원의 청정개발체제 사업 육성

-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CDM사업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체계 마련
  - 기업의 CDM사업 추진지원, 전문가 육성, 해외 CDM 사업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지정 또는 설치 검토
  - 정부대책(Program)을 CDM사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
- 해외 CDM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구축
  - MOU체결을 계기로 캐나다와 CDM사업 적극 추진
  -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과 양해각서 체결 등 CDM사업 해외 진출 추진

## 다.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및 대국민 인식증진

-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첨단 기술개발 투자 확대 필요
  - 탄소포집 및 저장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소분을 CDM으로 인정하기 위한 의제가 금번 총회에서 논의
-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기업의 대응전략 마련 지원

## 《 참고자료 》

### 1. 마라케시 합의문 주요 내용

- 개도국 및 경제전환국(동구권)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
-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
  - 기후변화특별기금(SCCF), 최빈국기금(LDCF) 및 적응기금 등 기금조성 근거마련
- 교토메카니즘 운영방법
  - 공동이행제(JI), 청정개발체제(CDM), 배출권거래제(ET) 등 교토메카니즘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
  - 메카니즘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량은 자국의 의무충족 후 대외 판매 가능
  - CDM 사업 이익금의 2%를 개도국의 적응기금으로 납부
- 교토의정서 의무준수 관련 이행체제
  - 의무준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의무준수 미 이행에 따른 벌칙규정

## 2. 국내에서 진행 중인 청정개발체제사업 추진 현황

프로젝트명	사업 참가자	규모 및 진행 현황
울산화학 HFC23 열분해사업	INEOS Fluor Japan, 퍼스텍(주), 울산화학(주),UPC Corporation	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기후변화협약 집행이사회 청정개발 체제사업으로 등록('05.3.24)
로디아 폴리아마이드 N <sub>2</sub> O 사업	로디아 본사(프랑스), 일본 로디아사	915만CO <sub>2</sub> 톤/년('01년 전체 배출량의 1.69%) 청정개발체제 집행위원회 등록 준비 중 (국가 승인 완료)
강원풍력발전 CDM 사업	유니슨(한국), 에코아이(한국), 마루베니(일본)	연간 CO <sub>2</sub> 150,000톤 저감 국가승인 완료
영덕풍력발전 CDM 사업	유니슨(한국), 에코아이(한국), 마루베니(일본)	연간 CO <sub>2</sub> 60,000톤 저감 국가승인 서면 검토 중
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발전 CDM 사업	한국수자원공사, 에코아이	연간 CO <sub>2</sub> 370,000톤 저감 타당성 확인 중
한국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 CDM (안동, 탐진, 대곡, 용담, 성남)	한국수자원공사, 에코아이	연간 CO <sub>2</sub> 19,526톤 저감 타당성 확인 중

### ▷ 기타

- 한국수자원공사 소수력 발전, 한국동서발전 태양광 발전(동해), 풍력발전(보성, 태백, 성산, 한경 등) 등 발전부문에서 약 13개 사업이 진행 중
- 수도권매립지, 위생매립지 LFG자원화 설비(대전, 대구) 등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자원화를 위한 3개 사업 진행 중

### 3.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“5개년 작업프로그램” 내용

#### □ 결정문 초안

- 금번 23차 SBSTA에서 동 작업 프로그램(부속서 포함) 채택
- 프로그램 검토는 28차 SBSTA에서 IPCC 4차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평가
- 5개년 세부 활동 결과를 검토하여 이후 활동에 대한 지침 마련
- 사무국은 가용자원을 확보하여 작업 프로그램 이행 지원
- 28차 SBSTA에서 작업 프로그램 이행진도를 점검, 추가활동을 검토하여 14차 당사국 총회('08. 12)에 보고

#### □ 결정문 부속서 초안

- 목적, 기대 효과, 작업 영역, 절차 및 활동, 세부 활동으로 구성
- 작업 영역은 당초 3개의 주제로 접근되었으나, 협상과정에서 2개로 접근(영향과 취약성 평가, 적응 계획 및 활동)
- 절차 및 활동은 2-track 접근방식으로 구성(초기 2년 내 수행가능 활동과 이후 3년간 추진 활동)하여 이후 활동에 대한 지침 마련
- 작업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조치로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및 회의 개최, 전문가 작업반 구성, 자료 축적(stock-take) 활동 등 실시

#### 4. 향후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EIG 공동입장(요약)

##### □ 기후변화협약(UNFCCC)의 기본원칙 준수

- "공통의 차별화된 책임", 개발도상국의 "특수한 필요와 특별한 상황"을 충분히 고려

##### □ 당사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장

- 당사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고 국내적 조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기후변화 체제

##### □ 기술개발과 확산을 위한 노력

- 혁신기술의 적극적인 개발, 확산과 이전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

##### □ 기후변화협약 이행평가

- 향후 기후변화대응 체제를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의 기후변화 협약 공약이행을 위한 정책과 조치에 대한 분석·평가 필요

##### □ 비용 효율적인 기후변화 완화정책 및 적응정책 채택

- 신축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체계와 청정개발체제의 잠재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제도개선
-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적응을 위한 협력체제 필수

##### □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요건

-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속서 I 국가의 의지,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을 통한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, 각각의 책임과 능력 및 상황에 부합하는 신축성 있는 접근방법 등

## 5. 캐나다와의 “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” 요약

### □ 활동 목적

- 교토의정서 12조(CDM사업), 마라케시협정문, 한국과 캐나다간 약정 등에 의거한 기후변화 대응사업 협력 촉진

### □ 추진 활동

- 양국의 공공 및 민간부문 협력 증진,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청정개발체제 사업 촉진
- 양국 청정개발체제 사업담당 기관간 상호 협력
- 청정개발체제 사업기준, 승인 절차, 지침에 대한 정보 교환
- 에너지 효율성 증진, 재생에너지 개발, 기후변화 완화, 탄소원 흡수 등을 위한 기후변화사업 촉진
- 능력형성, 기술개발 등에 관한 정보 및 의견 수렴

### □ 기 타

-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저감량(CER)의 소유권 존중
- 양해각서에 의해 발생된 사업들의 진전사항에 대한 양국간 정기적 협의 및 통보
- 양해각서로 인해 CDM사업 이행과 발전을 위한 자금제공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

### □ 발효 및 종료

- 서명일 발효 및 5년간 유효, 문서로 통보 후 6개월 후 종료